

광주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640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주

피고, 항소인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연주

3. E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8.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53612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와 주식회사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3,666,253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E와 주식회사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3,145,161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B은 33,666,253원, 피고 E은 33,145,161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E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3.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79,000,000원, 피고 C은 168,000,000원, 피고 E은 7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 C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이유 제8면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 부분을 모두 “제1심법원의”로 고치고 이하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15면 “다. 소결론” 이하 부분을 아래 제3의 나항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친다.

3.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피고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 따라 F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 원고는 F과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7년 4, 5월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피고 C(이하 제3의 가항에서 ‘피고’라고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의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하도급법 제14조에서 직불합의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사대금에 관하여 별도의 지급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이 불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직불합의 이후 원고와 F이 2017. 4. 20.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5. 1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F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서 확인한 공사대금 2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를 무효로 불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F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와 같이 별도의 약정에 기한 원고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 이상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F과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 보다 앞선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피고의 2022. 6. 7.자 준비서면 제4항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은 제척기간의 도과 주장으로 선행한다)을 다투는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즉 ‘F의 대표이사가 자기자본을 맞추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가 2016년 2월 초순경 F에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F이 일주일 후 그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변제에 갈음하여 2020. 3. 2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위 주장에 의하면 F은 자기자본을 맞추기 위하여 직원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던 데다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수년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F의 자금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심판결 이후 피고 B, E의 변제

1) 원고는 2022. 6. 9. 피고 B, E으로부터 각 7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도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 부분만큼 축소되어야 한다.

2) 이에 제1심판결문 제15면 3) 부분 다음에 “4) 한편 원고는 2022. 6. 9. 피고 B, E으로부터 각 7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다. 소결론”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따라서 F이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33,666,253원(= 41,166,253원 - 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87,543,424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E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33,145,161원(= 40,645,161원 - 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33,666,253원, 피고 C은 87,543,424원, 피고 E은 33,145,16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효진, 판사 김영아, 판사 김성흠

별지

부동산 목록

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A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8.657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779.8분의 6.5680
2	(1동의 건물의 표시) 강릉시 AB에 있는 AC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A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1.483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779.8분의 7.5013
3	지하2층 지상 7층 업무시설 1층 433.2㎡ 2층 내지 7층 각 529.78㎡ 지하1층 193.3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A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8.657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779.8분의 6.5680
4	지하2층 588.7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강릉시 AB 대 779.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A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8.657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779.8분의 6.5680
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A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8.657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779.8분의 6.5680

끝.

